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4천억원 지급

- 국세청, 2020. 12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*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(12.10.) 91만 가구에게 3,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. *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
-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.
-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,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
- 심사·지급 결과는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및 손택스(모바일앱)와 함께 자동응답시 스템(1544-9944),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한편,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(내년 3월) 또는 정기분(내년 5월)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·지급 현황

-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 가구이며, 신청금액은 4,383억 원입니다.
 - 심사를 완료하여 91만 가구에 3,97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,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입니다.

2 유형별 지급현황

- (가구유형별)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(58.2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, 홑 벌이 가구는 35만 가구(38.5%),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(3.3%)로 나타났습니다.
 -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,916억 원(48.2%), 홑벌이 가구 1,894억 원(47.7%), 맞벌이 가구 161억 원(4.1%) 순입니다.
- (근로유형별)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(52.7%),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(47.3%)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, 5.4%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 -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,005억 원(50.5%), 상용근로 가구 1,966억 원(49.5%) 순입니다.



지급결과 확인

-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(12.18.)보다 일주일 이상 앞 당겨 오늘(12.10.)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.(법정기한 '21.1.4.)
-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.
 -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'국세환급금 통지서'와 '신분증'을 가지고 우 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- * (대리인 수령)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국세환급금통지서, 위임장 지참
-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, 홈택스 및 손택스, 자동응답시스템(1544-9944),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●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(내년 3월) 또는 정기분(내년 5월)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참고 1 - '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

● 신청·지급 현황

(만 가구, 억 원)

구 분	신 청		지 급		지급 제외	
	가 구	급	가 구	금 액	가 구	금 액
합 계	102	4,383	91	3,971	11	412

●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

(만 가구, 억 원)

7 8	합 계		단독가구		홑벌이 가구		맞벌이 가구	
구 분	가구	금액	가구	금액	가구	금액	가구	금액
·20년	91	3,971	53	1,916	35	1,894	3	161
상반기	(100)	(100)	(58. 2)	(48. 2)	(38.5)	(47.7)	(3.3)	(4. 1)

●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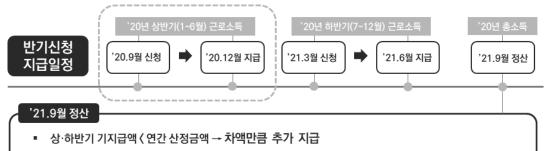
(만 가구, 억원)

구 분	합계		일용근로가구		상용근로가구	
	가구	금액	가구	금액	가구	금액
·20년	91	3,971	48	2,005	43	1,966
상반기	(100)	(100)	(52. 7)	(50.5)	(47. 3)	(49. 5)

참고 2 -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개요 및 2019년 지급 내역

1 제도 개요

-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('20년)과 장려금 지급시점('21년9월)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.
 - 연간 산정액의 35%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 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 간 지급할 근로·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.



- 상·하반기 기지급액〉연간 산정금액 →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
- 상반기분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,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.

Ⅰ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('20년 귀속) Ⅰ

구 분	신청기간	지급시기	지급액
 상반기분	'20. 9. 1. ~9.15.	'20년 12월 중	산정액의 35%
하반기분	'21. 3. 1. ∼3.15.	'21년 6월 중	산정액의 35%
_ 정 산	_	'21년 9월 중	추가지급 또는 차감

2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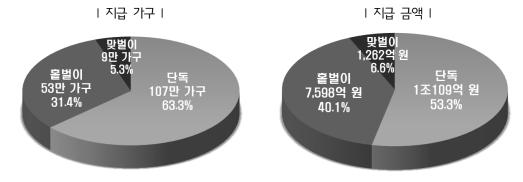
《지급 규모》

● 제도 도입 첫 해인 2019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169만 가구에 1조 8,969억원을 지급하였으며, 2019년 귀속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가구의 40.4%, 지급금액의 43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

《가구유형별 지급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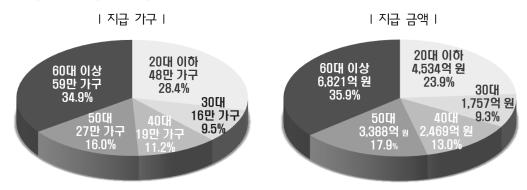
- 단독가구가 107만 가구(63.3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홑벌이 53만 가구 (31.4%). 맞벌이 9만 가구(5.3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- 지급금액은 단독가구(1조 109억 원), 홑벌이(7,598억 원), 맞벌이(1,262억 원) 순입니다.



《연령대별 지급현황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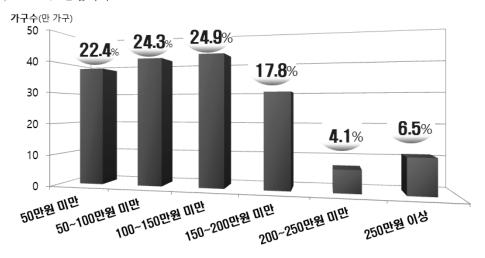
-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9만 가구(34.9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20대 이 하가 48만 가구(28.4%)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3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.
 - 지급금액은 60대 이상(6,821억 원), 20대 이하(4,534억 원), 50대(3,388억 원), 40대

(2,469억원), 30대(1,757억원) 순입니다.



《지급액 규모별 지급 현황》

●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~150만원 미만이 42만 가구(24.9%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50만원 이상~100만원 미만(41만 가구, 24.3%), 50만원 미만(38만 가구, 22.4%) 순입니다.



참고 3 -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

구	분	2020년분 정기신청	2020년분 반기신청	
신청대상자		2020년에 근로소득·사업소득·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	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	
대상기	장려금	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	근로장려금	
신청시기		2021. 5. 1. ~ 5. 31.	(상반기분) 2020. 9. 1. ~ 9. 15. (하반기분) 2021. 3. 1. ~ 3. 15.	
	가구원	2020. 12. 31.	2019. 12. 31.	
기준일	소 득	2020년 연간 총소득	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	
	재 산	2020. 6. 1.	2019. 6. 1.	
지급시기		2021. 9.	(상반기분) 2020. 12. (하반기분) 2021. 6. (정 산) 2021. 9.	
지급금액		산정금액의 100%	(상반기분) 35%, (하반기분) 35% (정산) 30%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	
(사례)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		120만원 지급(2021. 9.)	42만원 지급(2020.12.) 42만원 지급(2021.6.) 36만원 지급(2021.9.)	

참고 4 - 근로장려금(EITC) 및 자녀장려금(CTC) 개요

- (근로장려금 개요)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·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
 -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
 - (소득)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
가구 유형	총소득 기준금액	최대 지급액
단독가구	2,000만 원	150만 원
홑벌이가구	3,000만 원	260만 원
맞벌이가구	3,600만 원	300만 원

- 1) 총소득금액: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(총수입금액)·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×업종별조정률)·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·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- 2) 가구유형

(단독가구)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(홑벌이가구)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
(맞벌이가구)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
- (재산)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
- (자녀장려금 개요)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·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○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
 - (부양자녀)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
 - (소득)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
가구 유형	총소득 기준금액	지급액(자녀 1인당)
홑벌이가구	4,000만 원	50 ~ 70만 원
맞벌이가구	4,000만 원	50 ~ 70만 원

- (재산)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